

심화·보충 학습 과정 운영 규정

제정 : 1999.09.01

개정 : 2015.02.11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학생들의 총체적인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고, 정규 교과 과정에서 미처 습득하지 못한 학습내용을 심화·보충하는 목적으로 개설되는 심화·보충 학습 과정(이하 "본 과정"이라 한다. 영어로는 "Q+ Class" 칭한다)을 그 목적으로 한다.
[2015.02.11.개설]

제2조(개설과목 및 인원)

- ① 본 과정의 개설과목은 학습부진자를 위한 보충교과와 전공 수업 내용의 심화를 위한 심화교과로 하며, 교과목명은 담당 교수의 재량으로 한다.[2015.02.11.개정]
- ② 본 과정의 개설은 연중 가능하며 강의시간은 16시간 이상(실기 및 실습과목은 32시간)을 원칙으로 한다.[2015.02.11.개정]

제3조(개설 인원)

심화학습과정 개설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한다.[2015.02.11.개정]

제4조(학점인정)

- ① 본 과정에서 취득한 성적은 정규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.[2015.02.11.개정]
- ② 본 과정의 성적표는 별도로 작성하며, 이수한 과목명 및 시간수를 명시하고 이수구분을 Q(Qualified)로 부여하여 인정한다.[2015.02.11.개정]
- ③ 심화학습과정에서 4시간(실기 및 실습과목 8시간)초과 결석 시에는 학점을 부여할 수 없다.[2006.10.11개정]

제5조(업적평가)

- ① 본 과정 운영 실적은 개별교수의 교수업적으로 평가한다.[2015.02.11.개정]
- ② 이론과목은 매16시간(실기 및 실습과목은 매 32시간)에 대하여 교육 업적 평가 점수 3점을 부여한다(단, 강의료는 별도로 정한다)[2015.02.11.개정]

제6조(운영 절차)

- ① 본 과정을 운용하고자 하는 개별교수는 심화·보충 학습 과정 신청서(별표 1)를 교무처 학사지원과에 제출한다.
[2015.02.11.개정]
- ② 선정된 본 과정 담당교수는 심화·보충 학습 과정 계획안(별표 2)과 심화·보충 학습 과정 수강신청서(별표 3)를 교무처 학사지원과에 제출한다.[2015.02.11.개정]
- ③ 본 과정을 종료 후 담당교수는 심화·보충 학습 과정 수료확인서(별표 4) 결과보고서(별표 5) 및 출석부를 교무처 학사지원과에 제출한다.[2015.02.11.개정]
- ④ 교무처 학사지원과 및 개별교수는 본 과정 운용 관련 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한다.[2015.02.11.개정]

부 칙

- (1)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- (2)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11일부터 시행한다.
 - (3)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5년 0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- (경과조치) 이 개정규정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